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농촌지도소)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6

제출일 : 1996.

제출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첨단기술이전, 새기술발굴, 애로기술 해결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주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영주시 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고급인력과 협력을 통한 영주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주시 경북 대학교 협력 농업 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조례안 제1조)
- 연구소는 영주시농촌지도소에 둠(조례안 제2조)
- 연구소는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특화작목의 애로기술 개발, 새소득 작목 발굴 등을 연구 개발함(조례안 제3조)
- 연구소는 소장 1인을 두고, 5인이내의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을 두고 분야별로 연구를 담당하게 하며, 2인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음(조례안 제4조)
- 연구소장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함(조례안 제5조 제1항)
-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시소속 직원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임면하고, 사무보조 원은 시장이 임면하도록 함(조례안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 시소속 직원이 아닌 연구소장 및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이 장기간의 출장 등으로 연구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음(조례안 제6조)
-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위촉기간은 2년 보조연구원은 1년 이내로 하고 재 위촉 할 수 있음(조례안 제7조)
- 연구소장은 시장이 의뢰한 과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제출하며,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은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보고함 (조례안 제8조)
-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6월과 12 월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조례안 제9조)
-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함(조례안 제10조)
- 연구과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시소속 직원이 아닌 연구소장과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함(조례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자료 : 조직배양 기술개발 사업 운영 계획 1부(붙임)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영주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애로 기술개발, 새소득작목 기술개발, 조직배양 기술개발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 치) 연구소는 영주시 농촌지도소내에 둔다.

제 3 조(기 능)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분야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1. 조직배양기술의 농업실용화 연구개발
 - 가. 동·서양란, 자란, 새우란, 백합등 유망 화훼류
 - 나. 사과, 인삼, 산약, 하수오등 지역특화작목
 - 다. 조직배양묘 순화 및 증식과 무병우량묘 생산
2. 지역특화작물의 새기술 및 애로 기술개발과 유망 새소득작물의 빌굴
3. 기타 시장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4 조(구 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② 연구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연구원 또는 보조 연구원을 두고 제3조 각호의 분야별로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에 2인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 5 조(자격과 위촉) ① 소장은 4년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는 교수로 재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원은 농과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나 농업관련 연구소의 연구관으로 재직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을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시소속 직원중에서 4년제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시장이 임면한다.
- ③ 보조연구원은 농과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에서 농업을 전공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절차는 제2항과 같다.
- ④ 사무보조원은 시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제 6 조(해 촉) 시소속 직원이 아닌 소장 및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출장 또는 질병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결과를 얻지 못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때
4. 본인이 사업을 원할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조(위촉기간) ① 시소속 직원이 아닌 소장 및 연구원의 위촉기간은 2년, 보조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소속 직원이 아닌 소장 및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이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 8 조(임무)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③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의 과제수행을 보조하며 그결과를 연구원에게 제출한다.
- ④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관련분야 시소속 직원에게 연구기술과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 기타 정보제공을 하고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사무보조원은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장 및 연구원의 연구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 9 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농민대표등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발굴, 계획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개발계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한다.

제 10 조(예 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 11 조(연구개발비 및 수당)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소속 직원이 아닌 소장 및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 : 연구수당 연 1,000만원 이내
2. 연구원 : 연구수당 1인당 연 500만원 이내
3. 보조연구원 : 보조 연구수당 1인당 연 200만원이내

③ 시소속 직원이 아닌 소장 및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협의를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답사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12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96 조직배양사업 운영 계획

관·학 협력체 구축

생명과학기술의 농업 실용화 방안 개발

□ 목 적

-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과학기술의 실용화 추진
- 특화작목의 무병 우량묘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장 소 : 영주시 농촌지도소 (조직배양실)
- 시설규모 : 조직배양실 22평, 순화온실 50평
- 총 사업비 : 47,508천원

□ 사업내역

사업명	추진, 사항	소요예산	비고
조직배양실 운영	· 무병 우량묘 대량생산	6,600	천원
조직배양실 기술협력체 운영	· 희소가치가 높은 작목(야생화, 난류등)의 우량묘 개발	20,908	
조직배양 기술개발 연구	· 지역특화작목(사과, 하수오, 산약등) 조직배양 기술개발	20,000	

□ 사업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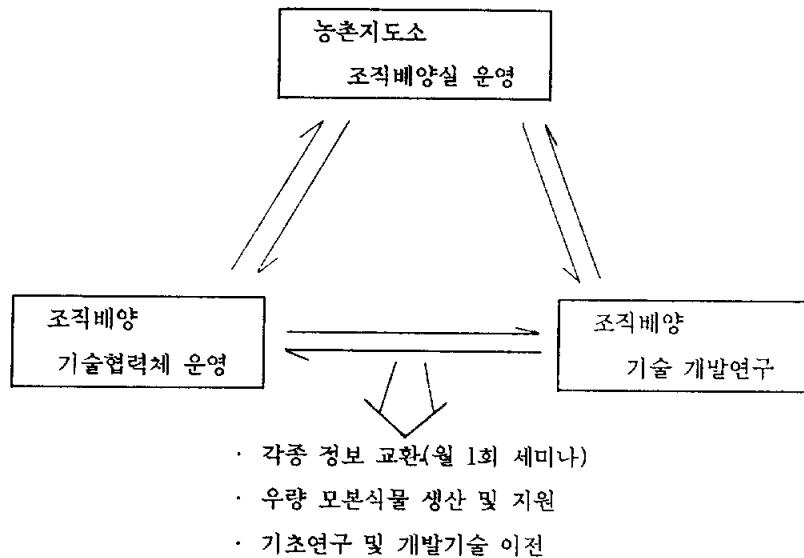
사업명	추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직 배양 실운영	↔ 추진 계획 수립			배양 실운영 (한란외 5종 배양묘 5,000본 증식)								
조직 배양 실기술 협력체운영	↔ 협력 기구 운영 (안) 수립	↔ 협력 기구 설치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협력 기구 운영 (자란외 3종 우량묘 개발)							↔ 평가 정산
조직 배양 기술개발		↔ 기술 개발 연구팀 구성			지역 특화작목 조작 배양 기술 개발 연구							

* 세부 추진 계획은 사업별로 별도 작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 지침에 의함
- 사업비의 민간자본이 전은 협력 대상기관으로부터 조직 배양 기술 협력체 운영 계획서를 받아 시기별 소요액을 검토 총괄 책임자 확인 후 연구 책임자에게 시기별 소요액을 일시 또는 분활 지급하고 사업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및 장부를 작성 보관함
- 사업비 중 연구 개발비는 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을 구성 연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총괄 책임자 검토 후 연구 규모, 착수 시기, 시기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분활 지급한다.
연구 기관에서는 시기별 자료 조사 연구 월일을 명시하고 각 사항에 대한 자료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및 장부는 최종년도 기술 개발 사업 종료일 후 5년간 보관함

□ 종합 추진 방향



□ 기대 효과

- 관·학 협력 첨단과학 실험으로 대외 신뢰도 구축
- 생명과학의 농업 조기수용으로 개방화에 대응
- 조직배양기술의 체계적 농업활용 방안 개발
- 고급인력과 협력체계구축으로 첨단기술 조기습득을 통한 지역농업발전 기여
- 무병 우량묘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조직배양실 운영 계획 〉

□ 운영방향

- 조직배양기술 협력기관의 우량 모본식물, 각종 정보·기술 지원
- 특화작목의 조직배양기술 응용으로 무병 우량묘 생산
- 조직배양 우량묘 순화 및 증식으로 농가보급
- 농업인의 교육장화로 첨단과학 기술농업 선도 실현

□ 소요예산 ————— 6,600천원

- 배양실 운영 현황판 제작(일반수용비) 500
- 배양실 운영재료 구입(재료비) 1,200
- 배양실 기자재 구입(자산취득비) 4,400
- 순화온실 운영재료 구입(재료비) 500

□ 배양실 운영 계획

- 무병 우량묘 생산

구 분	계	동양란	서양란	자 란	사 과	산 약
배양묘 생산	5,000 본	800	1,000	3,000	100	100
증식묘 생산	3,800	500	800	2,500	-	-
농 가 분 양	2,000	-	-	2,000	-	-

* 증식묘 생산 : 순화온실 활용 순화 및 증식

○ 배양 순기표 및 월별 작업 계획서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판류				라이온 및 프로트콤 중식(120명)			라이온 및 프로트콤 중식(90명)				라이온 및 프로트콤 중식(70명)	
					식물체 분화 유도(150명)				식물체 분화 유도(120명)			
							순화 처리(700본)				순화 처리(600본)	
자판			신소증식(75명)		신소증식(90명)		신소증식(90명)		식물체 분화 유도(150명)		식물체 분화 유도(90명)	
				식물체 분화 유도(120명)				식물체 분화 유도(150명)			식물체 분화 유도(90명)	
					배양묘 증식(700본)				배양묘 증식(1,300본)			
사과			신소증식(30명)		신소증식(60명)					신소증식(45명)		
				신소증식(30명)								
산악				신소증식(30명)		신소증식(45명)				신소증식(45명)		
기타		선인장 신소증식(30명)	안스풀 신소증식(45명)	백합 신소증식(45명)	선인장 신소증식(45명)	안스풀 신소증식(45명)	백합 신소증식(45명)					
			선인장 식물체 분화(30명)			안스풀 식물체 분화(30명)						

〈 조직배양 기술 산·학 협력 연구사업 〉

사업명 : 조직배양 기술개발 사업

운영방향

-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명과학기술의 농업실용화 방안 개발
- 희소가치가 높은 작목(야생화, 난류등)의 조직배양기술 개발
- 지역특화작목(사과, 하수오, 산약등)의 조직배양기술 개발
- 우량 모본식물, 각종 정보·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 지역특화작목의 새기술 및 애로기술 개발과 유망 새소득작물의 발굴

연구협력기관 :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 연구소)

사업기간 : '96. 1. ~ (계속사업)

총사업비 : 69,908천원

○ '96조직배양기술개발 사업비————— 40,908천원

- | | |
|--------------------|--------|
| - 기술협의회 개최(운영수당) | 3,000 |
| - 기술협력체 운영(재료비) | 7,908 |
| - " (민간자본이전) | 10,000 |
| - 기술개발연구 지원(연구개발비) | 20,000 |

○ 예산 부족액(추경요구)————— 29,000

- | | |
|----------------------|--------|
| - 연구 자료수집 및 출장(운영수당) | 5,000 |
| - 기술연구 지원 (연구수당) | 24,000 |

□ 사업추진방향

- 특화작목의 무병우량묘 생산 기술 개발
 - 생장점 치상 무균발아 바이러스 검정
 - 원괴체 증식 및 개체분화
 - 순화 및 육묘(기본식물생산)
- 우량 모본식물, 각종 정보·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 동양란, 서양란, 자란등 무병우량묘 대량생산 농가보급
- 특화작목의 새기술 개발 및 우수품종 육종 개발
-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유망 새소득작물의 발굴

□ 사업수행

기술개발사업 운영 계획수립

- 경북대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와 상호 협의 협력기구명 및 협력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기술협력체 운영 및 연구과업수행 표준계약서 작성

협력 기구 설치

'96. 2.

- 계약 체결후 협력기구운영 및 연구과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책임자 위촉
-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협력기구 운영 계획서 및 연구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서 작성하여 총괄 책임자에게 제출
- 총괄 책임자는 계획서를 검토 후 협력기구 운영 및 연구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시설 제공 및 사업비 지급

협력기구 운영 및 연구과업 수행

'96. 4.

- 세부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기술개발연구 대상
 - 사과, 산약, 하수오, 동양란, 서양란, 우수 자생식물 등
 - 특화작목의 새기술 개발 및 우수품종 육종 개발
 -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유망 세소득작물의 발굴
- 기술개발 협의회 월1회이상 개최
- 기초연구와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 관련 정보제공
- 우량 모본식물 지원 및 무병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 분기별 협력 기구 운영(과업 수행) 보고서 작성
- 각 사항에 대한 사업비 지출근거 제출

종합 평가 및 사업비 정산

'96. 12.